

<p>②(사용 중인 공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p>	<p>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p> <p>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p>						
<p>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p>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tr> <td>의안 번호</td> <td>888</td> <td>2001년 6월 일 보건사회위원회</td> </tr> </table>	의안 번호	888	2001년 6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table border="1"> <tr> <td>의안 번호</td> <td>889</td> <td>2001년 6월 일 보건사회위원회</td> </tr> </table>	의안 번호	889	2001년 6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의안 번호	888	2001년 6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의안 번호	889	2001년 6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p>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2001년 6월 26일 상정·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국장 김상돈) 가. 개정이유 “맹인”이라는 용어는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으로, 시립맹인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시립맹인복지회관”의 명칭을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함.</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석수)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맹인”이라는 용어를 시각장애인으로 변경하고,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시립맹인복지회관”의 명칭을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맹인을 법적 용어인 시각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표기로 생각하며, 또한 복지관이 소재한 지역명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은 유사시설과의 혼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p> <p>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p> <p>5. 토론요지 ○없음</p> <p>6. 심사결과 ○원안가결</p>	<p>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2001년 6월 26일 상정·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국장 김상돈) 가. 개정이유 의약품 및 식품 등에 대한 시험수요에 부응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이 개정·시행(2001.1.18, 보건복지부령 제187호)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우리 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수수료를 조정하고, 일부 검사·시험분야 및 항목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검사·시험항목 등에 대한 수수료 조정 (안 별표 1) ○보건복지부령 수수료 준용 : 238건 ○행정자치부 원가분석요령에 의한 수수료 재산정 : 1건 ○검사·시험항목 신설로 인한 수수료 책정 : 2건 ※ 현행 조례에 의한 수수료 유지 : 132건 (2)검사·시험항목 신설, 통·폐합 및 정비·보완(안 별표 1)</p> <table border="1"> <tr> <td>20개 분야 32개 세부분야 424개 검사·시험항목 (현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15개 분야 26개 세부분야 373개 검사·시험항목 (개정)</td> </tr> </table>	20개 분야 32개 세부분야 424개 검사·시험항목 (현행)	↓	15개 분야 26개 세부분야 373개 검사·시험항목 (개정)			
20개 분야 32개 세부분야 424개 검사·시험항목 (현행)							
↓							
15개 분야 26개 세부분야 373개 검사·시험항목 (개정)							